창조경제 멍석깔기 ①

벤처·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

– 엔젤투자 및 M&A 활성화를 중심으로 –

2013. 5. 15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문제점 및 보완과제 ····· 2

Ⅲ.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 ····· 7

1.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····· 9

2. 벤처·창업 인프라 확충 ····· 18

Ⅳ. 기대 효과 ····· 26

Ⅴ. 향후 계획 ····· 28

Ⅰ. 추진 배경

◇ **"벤처자금 생태계"**는 새정부가 추구하는 **창조경제 생태계의 일부**로서, 혁신형 기업이 **창업 후 성숙단계를 거쳐 나가는 과정**

◇ **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창업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**은 **별도의 과제로 다루어나갈 계획**

현재 **벤처자금 생태계**는 **「창업 → 성장 → 회수 → 재투자/재도전」 단계별 순환이 막혀있고, 자금지원 방식·규모**면에서 **실효성 저하**

① **(초기 창업자금 부족) 기술창업**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**高위험·高수익** 구조에 상응하는 **투자 인센티브**가 부족

* 시중에 유동자금은 넘쳐나지만, 정작 기술창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은 부족하여 현장의 벤처인들은 자금공급에 대한 불만을 지속

② **(중간 회수시장 부재)** 코스닥 상장이외에 **벤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갖추어지지 못해** 벤처투자를 주저

* 코스닥 상장에 14년이 소요되어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시장역할을 못함

③ **(재투자·재도전 미흡)** 성공 벤처기업인의 **재투자 여건** 및 실패 기업인의 **재기기회가 부족**하여 벤처자금의 **생태계내 환류 저해**

⬇

현재의 자금생태계 유지로 **사업화·회수 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**되면, **창의적 자산형성 및 융·복합** 등 **창조경제 구현 자체가 어려움**

◇ **창의적 자산**의 **사업화** (기술창업, 기술혁신형M&A)를 **지원**하는 **벤처자금 생태계**의 **선순환 구조**를 **우선적으로 마련**하여

◇ **창조경제*** **구현**을 통한 **새로운 시장·일자리 창출**에 기여

* **상상력과 창의성**을 **과학기술과 ICT에 접목**하여 **새로운 산업·시장을 창출**하고 **기존산업을 강화**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 (미래부 업무보고)

Ⅱ. 문제점 및 보완과제

1 그간 벤처·창업 정책에 대한 평가

◇ 그동안 벤처·창업 정책은 비교적 빠른 기간에 **벤처 관련 산업 및 생태계의 태동·성장**에 기여하였으나,

◇ **정부의 직접적 지원**에 크게 의존하고, **민간의 투자의욕을 근본적으로 제고**하지 못한 문제점 노정

□ **(창업투자)** 모태펀드 설립('05) 등으로 **벤처캐피탈 투자규모는 크게 성장**하였으나, 아직까지 **공공부문 의존도가 큰 상황**

* '12년 벤처펀드 출자자 비중(%) : 정부기금 32.8 (모태 28), 연기금 11.7, 금융기관 20.7 (정금 5.6), 일반법인 16.1

○ 특히, 벤처 붐 붕괴 이후 벤처캐피탈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비해 **엔젤투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**

* 한국의 적정 엔젤투자 규모(자본연) : 연 42백억원. 반면, '11년 엔젤투자 296억원

□ **(회수시장)** 코스닥 시장 이외의 **회수시장 확충 노력이 소홀**하였고, **코스닥**도 일부 사건을 겪으면서 **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운영 전환**

○ 3차례에 걸쳐 **「M&A활성화 방안」('04, '07, '09)**을 마련하였으나, **벤처기업 중심**의 **제도적 개선** 위주로 실제 **자금유입 효과는 부족**

* 간이합병 기준 완화 등 절차간소화, M&A 정보중개시장 개설 등
* M&A펀드 운용현황('08~'13.3) : 7,821억원(20개 펀드) 조성, 4,071억원 투자

□ **(인프라)** 최저자본금제 폐지, 창업절차간소화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**창업 환경은 상당히 개선**

* 창업환경(세계은행) : ('08) 126위 → ('12) 24위, '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' 구축 등

○ 다만, 청년들이 **창업을 진로선택의 중요한 대안으로 고민**하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**청년 등의 기업가정신이 미흡한 상황**

2 벤처·창업 생태계의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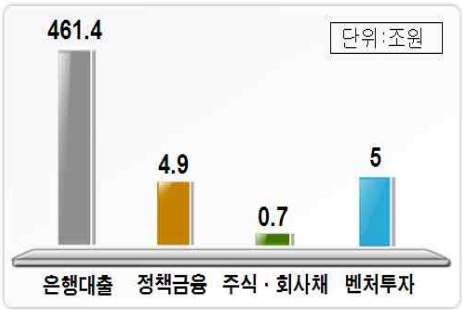
1 창업·초기 특성에 맞는 투자공급 부족

□ **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**으로 인해 실패에 따른 **위험부담 가중**

*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액 (472조원)의 **99% (466조원)를 융자에 의존**

○ 과감한 도전보다는 **저비용 위주의 안정적 창업**을 선호

< 中企 자금조달 현황('12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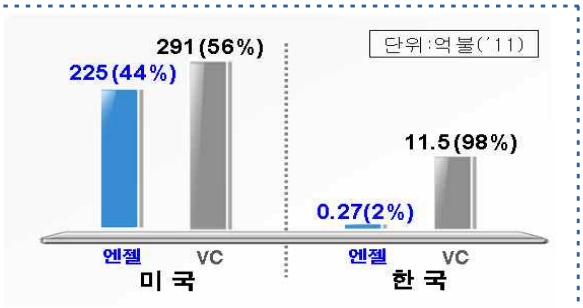
□ **창업 초기** (통상 3년이내)에는 **엔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**이나, **국내 엔젤시장**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**매우 열악한 실정**

* **미국**은 엔젤투자 (225억$)가 벤처캐피탈 투자 (291억$) 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, **국내** 엔젤투자는 전체 벤처투자 (11.77억$) 대비 2%에 불과

국내 엔젤투자 규모



엔젤·벤처캐피탈 (VC) 투자 규모 비교



□ **창업 아이디어**를 쉽게 사업화하고, **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**을 유도하는 **창업 플랫폼은 사실상 부재**

* (사례) **미국** (Quirky), **독일** (Troika) 등에서는 아이디어 상품의 생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**제조업 분야 사업화 플랫폼**을 운영

⇨ **초기 엔젤투자**의 **위험을 보상**할 수 있는 **제도적 인센티브를 강구**하고, **민간엔젤 시장을 보완**하기 위한 **정책금융의 역할 강화**

⇨ **아이디어의 사업화**를 지원할 **창업 플랫폼 구축·다양화**

2 중간 회수시장 미성숙 및 제도적 지원 미흡

(1) M&A 시장의 미성숙

① 직접 R&D 수행을 선호하는 제도와 관행

○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**R&D투자는 감소**하는 반면, "개방형 혁신"(Open Innovation)을 통한 기술획득 수단인 **M&A 투자는 증가 추세**

> [사례] 美 Cisco社의 M&A를 통한 기술 획득
> ☞ Cisco는 **지난 20년간** 새로운 기술의 상당부분을 **111개 벤처기업을 인수**하여 기술을 획득하고,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출시

○ 반면, 국내에서는 **명시적 기술취득**(직접 수행 R&D 또는 특허권 등)에만 **세제 혜택**을 부여하여, 기술형 **M&A를 유발**하는 **인센티브 취약**

② 기업 매각에 따른 과도한 세제 부담

○ **주식교환** 방식의 M&A 경우, 매도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**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**에서 **주식을 매각**하거나 **자금을 차입**

○ 이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**과도한 양도·증여세 부담**으로 창업기업 등에 대한 **후속·재투자 여력이 상당히 축소**

> [사례] 한국, G사의 벤처기업 P사 인수
> ☞ 외국기업 G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 P사를 **자산가치 대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인수**(경영권 프리미엄 인정)
> ☞ P사는 상증법상 시가의 30% 이상으로 매각한 이유로, 초과부분에 대해 양도세(11%) 대신 **증여세(최대 50%) 납부**

③ 기업규모 확장을 저해하는 법·제도

○ **국내 대기업**은 M&A 시장의 **잠재적 큰손**이나, **계열사 증가에 따른 부담 및 부정적 여론** 등으로 주저

○ **중소기업**간 합병 시에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(관계기업 제도 적용), 일시에 **각종 지원제도에서 제외**되는 결과를 초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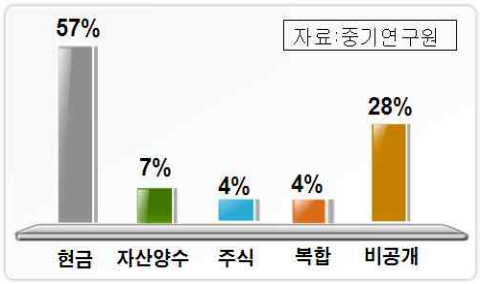
④ **M&A에 특화된 자금공급 미흡**

○ 매도자는 M&A 대가 **지급 방식으로 대부분 현금을 선호** (57%)

○ 매수자는 **투자자금 확보** 및 **신주 발행** 어려움 등으로 **차입에 의존**

→ M&A에 따른 **금융부담 과중**

< M&A 대가 지급방법 >



⇨ **M&A 세제부담 완화** 및 **R&D에 준하는 세제 인센티브** 강구

⇨ **대형 자본의 M&A 시장 진입** 촉진을 위한 **제도적 장치** 마련

(2) 중간 회수시장 인프라 취약

① **기술보호 환경 취약**

○ **M&A 보다 저가의 비용**으로 **경쟁사의 기술 도용·탈취**가 용이

→ 고비용으로 **M&A를 추진할 유인이 적고** 신생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워, 자생적 **성장생태계를 고사시키는 원인**으로 작용

② **광범위한 매물정보 유통경로 부재**

○ 선진국과 같이 **전문 투자회사** (IB) **등이 발달**되어 있지 않아, **소형 자문사** (부티크) 위주의 **개인 네트워크**에 크게 의존

→ **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매도를 포기**하는 사례도 다수

③ **코스닥 시장 :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용**

○ **상장심사**시 수익성 등 일정 수준이상의 **재무성과를 요구**하고, 경영안정성 확보 등 **질적심사 과정**에서 **보이지 않는 진입장벽** 형성

* 코스닥 상장기업의 **평균 순이익률은 5%내외** ('12.상)이나, 최근 **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순이익률은 2~3배 높은 11~16% 수준** ('08~'12)

⇨ **'甲-乙 관계'** 등에 따른 **기술탈취 예방 및 제재 강화**

⇨ **코스닥 등 최종 회수시장의 기능 활성화** 모색

3 벤처자금 생태계로의 환류 미흡

①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재투자에 대한 유인부족

○ 주식교환 즉시 과세, 과다한 세제부담 등으로 후배 창업기업에 대한 **후속·재투자 여력이 상당히 축소**

→ 벤처기업으로 **성공한 벤처 1세대**들이 **엔젤투자자 등으로 전환되지 못하여**, 생태계내에서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차단

② 재도전·재기를 막는 제도와 관행이 존재

○ **건강한 실패**까지 모두 **동일한 기준으로 대우**함에 따라, **실패한 경험을 활용**한 **새로운 벤처투자·창업**이 이루어지지 못함

○ 특히, **실패한 벤처기업**이 **구조조정·회생**되어도 관련 기업인은 계속적으로 **채무상환, 금융이용 제한** 등을 부담

* 가족, 친인척, 임직원 등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으로 한번의 창업실패로 가족 등 관련인 전체의 재기와 재도전이 불가능

③ 성공한 해외동포 등 벤처전문가들이 엔젤투자자, 멘토 등으로 창업·벤처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부족

○ **벤처의 특성**과 **실패의 경험**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성공한 **벤처 투자자 등을 활용**할 수 있는 **지원체계가 미흡**

○ **성공한 해외동포 기업가**,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**외국인** 등의 **국내 창업과 투자**를 유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

⇨ **성공한 벤처 1세대** 등의 **재투자 유인을 제고**하고, 성공 경험을 활용하는 **멘토링·컨설팅** 활성화

⇨ **건강한 실패**의 **재도전 기회를 확대** (→ 과감한 도전문화 형성)

Ⅲ. 추진방안 및 실천계획

지난 15년간 벤처·창업 활성화를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으며, **앞으로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**를 **획기적으로 강화**할 계획

기 본 방 향

□1 **창업기업**의 **자금조달 구조**를 **「융자 → 투자」** 중심으로 변경

○ 벤처·창업기업의 **「고위험·고수익」 구조에 대응**한 지원

○ 벤처의 **재도전·재기가 용이**하게 하여 **실패 경험도 활용**

□2 **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·회수 시스템** 확충

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**엔젤투자 활성화** 및 **민간자금 유입을 견인하는 정책금융의 역할**을 강화

② **기술혁신형 M&A 활성화**, **코넥스** 신설 및 **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**을 통해 **중간 회수시장의 획기적 확충** 유도

③ **벤처 1세대** 등 성공한 선배들의 **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이 견고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**

□3 창업 플랫폼 다양화, 우수인력 유입, 기술탈취 방지, 재도전 환경 개선 등 **벤처생태계의 기본적 하부 인프라**도 함께 확충

◇ **이번 대책은 그간 제기된 벤처·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한 것으로,**

◇ **창조경제 구현을 밑받침하는 멍석을 깔기 위함**

「벤처·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」 개관

	초기/창업 단계 (0년~3년)	중간/성장 단계 (4년~9년)	회수/성숙 단계 (10년~15년)
세제 지원 **민간 투자**	엔젤투자 활성화 *5천만원까지 50% 소득공제 (종합한도 40→50%, 캡 예외) *기술형 창업기업까지 확대	기술혁신형 M&A 활성화 *매수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(직접R&D투자에 준하는 감면) *매도기업 증여세 부담완화 (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 M&A의 경우 증여세 대상에서 원칙 제외)	재투자 유인확대 *회수금 재투자시 양도세 이연 *주식교환시 새주식 매각까지 양도세 과세 이연
규제 완화	크라우드 펀딩 신설 *공시부담 등 규제완화 *온라인 펀딩플랫폼 허용	M&A 절차·부담 간소화 *계열사 편입 부담 완화(3년) *중소기업 졸업유예(3년) *소규모·간이합병 적용대상 확대	코넥스 신설 *심사·공시, 투자제한 완화 *거래세 인하, 양도세 면제 등 코스닥 독립성·전문성 강화 *조직·상장심사 제도개편 등
정책 자금 예산	미래창조펀드(초기형) *모태·정책금융 등, 2,000억원 전문엔젤 매칭R&D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*기보, 500억원	미래창조펀드(M&A, 성장형) * 3,000억원 지식재산권 보호펀드 *성장사다리內 1,000억원 추가 M&A보증/융복합 맞춤형보증 *신보, 1,000억원/기보, 3,000억원	재기기업 투자·엔젤매칭 펀드 * 성장사다리, 1,000억원 활용 성장사다리 펀드 * 정책금융+민간, 2조원 재창업자금 * 400억원 (→'17. 1,000억원)

멘토링, 컨설팅, 재투자

벤처멘토링 창업펀드(1,000억원)
벤처멘토링단 구성·운영
(성공한 벤처1세대, 해외동포 등)

벤처 창업 기반	창업플랫폼 확대 *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*보육·투자·R&D 연계 기술창업 *개방형 공공정보 활용 창업	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* 기술임치, 해외특허지원, 처벌강화 M&A 인프라 확충 *M&A정보거래소 기능 강화 *기술평가정보 종합D/B 공개	재도전 환경 개선 *친인척, 임원 등 연대보증 폐지 *회생기업 관련인 금융제한 완화 *기업회생절차 기간·비용 감축
인력 유입	연구인력의 창업촉진 *정부출연(연) 창업친화 지표 도입 *휴·겸직을 통한 창업기업 참여	벤처 스톡옵션 개선 *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분납 *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옵션허용 벤처비자 → 창업비자로 확대	

1.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

성장 단계별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제를 정착시키고, **선배 세대의 조기 회수 자금이 후배 세대에 재투자**되는 환경을 조성

1-1 (창업·초기 단계)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

(1) (Pre-Angel) "크라우드 펀딩(Crowd Funding)" 제도 신설('13)

○ 공시부담 등을 완화하여, **온라인 펀딩플랫폼**을 통해 **다수의 소액 투자자**로부터 **십시일반**(十匙一飯)으로 **초기자금을 손쉽게 조달**

* 크라우드업 자격요건, 모집·투자금액 한도, 투자자 보호장치 등 규율체계 마련
* (사례) **美, JOBS법 제정**('12.4)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을 법제화

(2) (Angel) 투자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

○ 엔젤투자에 대한 **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를 50%까지 확대**하고, 투자 대상도 **"기술성 우수 창업기업"까지 확대**

* (현행) **소득공제 비율(30%) 및 한도(40%)**가 낮고, 투자대상도 **벤처기업에 한정**
* 국가별 소득공제율 : 미국(버지니아주) 50%, 일본 40%, 싱가포르 50%

구 분	현 행		개 선
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	30%		• **5천만원 이하 : 50%** • **5천만원 초과 : 30%**
연간종합소득 중 공제한도	40%	➡	**50%**
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	벤처기업		• 벤처기업 • 기술성 평가* 통과 **창업기업(3년미만)**

* 벤처특별법 제2조의2 ①항 2호 다목 (3)에 의한 기술성평가(엔젤투자용 평가지표 마련)

○ 엔젤투자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, **엔젤투자 금액**(개인 및 투자조합)은 **특별공제종합한도*(2,500만원) 적용시 예외 인정**

* 의료비, 교육비, 공제부금, 청약저축,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공제 합계

(3) (전문엔젤) 전문적 엔젤투자가 양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

○ **전문엔젤*** **투자**에 대해 **매칭 R&D**를 지원(업체당 2억원)하고,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**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**

* **자본, 경험,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** 등으로서 일정요건(예 : 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)을 충족하는 **전문엔젤 그룹을 등록·운용** ('13.하)

(4) (정책금융) 민간자금 시장실패 분야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

1 **(투자)** 민간과 함께 **「미래창조펀드」 조성** (기재부, 미래부, 금융위, 중기청)

○ **(규모) 5,000억원** (민간 3,500억, 정책금융 1,000억, 모태펀드 500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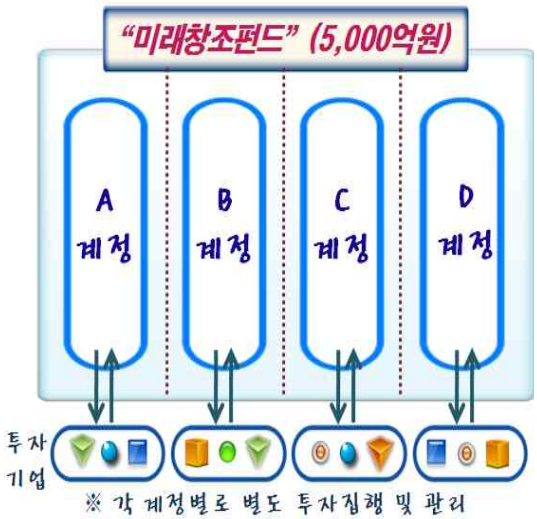
○ **(구조) 단일 펀드**로 구성·운영하되, 계정분리(divided account) 방식 채용

* 펀드 내에 **주 목적이 되는 투자대상**에 따라 **계정**을 **설정·관리**

* **각 계정 단위로 투자, 정산**하고, 수익을 배분

* 한국벤처투자조합 형태로 설립하고 **모태펀드 운용사가 총괄**

* 각 **계정별로 전담 운용사 지정**



○ **(운용)** 성장성 높은 벤처·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되, **초기(3년 이내) 전문투자 계정**에 **40%(2,000억원)** 배정 (나머지는 후속·성장투자에 활용)

○ **(특징) 창업초기** 투자계정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**이익·손실 배분을 차등화**

* **민간 출자자 수익 우선배분(예 : 3%) 인센티브 부여를 원칙**으로 함
* **공공자금 우선손실 충당 방식** 계정도 **200억원 이내** 운영

2 **(보증) 창업 전에 예비평가**를 거쳐 **사전에 보증을 확약**하는 **「예비창업자 특례보증」 신설** ('13. 기보, 500억원, 5억원 한도 100% 보증)

1-2 (성장·회수 단계) 투자 수익의 조기회수 촉진

(1) 기술혁신형 M&A 제도 및 세제지원 신설

신기술 획득 등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**"기술혁신형 M&A"**에 대해 **R&D에 준하는 세제상 인센티브** 부여

□ **(현행) 연구·인력개발비** 및 **특허권 등 취득금액**에 한해서만 **세액공제**를 허용하고, **M&A**에 대해서는 **증여세 완전포괄주의**를 적용

○ **중소기업**의 경우, **R&D 비용의 25%**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 (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**예외적으로 30%** 인정)

○ **거래액과 시가(상증법)의 차액**이 시가의 (ⅰ)30% 또는 (ⅱ)3억원을 초과한 경우, **「차액-(ⅰ)또는(ⅱ) 中 적은금액」**에 대해 **증여세** 부과

* **"정당한 사유"**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, 납세자가 **"정당한 사유"** 등을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**납세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경우가 있음**

□ **(개선) "기술혁신형 M&A"로 인정**되는 경우, **세제상 특례 도입**

「기술혁신형 M&A」 정의 및 인정 기준
• **(대상) '벤처기업'** 또는 '매출액 대비 **R&D투자 비중 5% 이상** 중소기업'
• **(기준) 인수금액이 세법상 시가의 150% 이상**인 M&A

* (참고) **R&D 투자비중** ('11, 제조업 기준) : 대기업 1.7%, **중소기업 1.1%**

○ **(매수기업)** R&D 세액공제 제도를 준용하여, **M&A 거래가액 中 기술가치 금액의 10%를 법인세에서 공제** ('13.하, 조특법 개정)

- 기술가치는 **기술평가기관*의 평가액** (평가를 받은 경우) 또는 **{인수가액-(시가×1.3)}로 의제**하되, **매수기업이 산정방법 선택**

* 벤처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⑤항에 의한 기술평가기관

○ **(매도기업 주주)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·합병 거래**의 경우, 원칙적으로 **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** ('13.하, 상증법시행령 개정)

(2) M&A 관련 규제완화

M&A로 인해 **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**하고, 보다 용이하게 인수·합병이 가능하도록 **절차를 간소화**

1 M&A로 인한 규모 확대 부담 완화

○ **(현황)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의 30% 이상을 인수**하고 **최대 출자자**가 되는 경우, **계열사로 편입**됨에 따른 부담 가중

- **중소기업간 인수**의 경우에도, 관계기업 제도에 따라 **중소기업 범위 초과 즉시 중소기업 지위 상실**

○ **(개선)** 대기업이 **우호적 M&A**로 중소기업* **대주주**가 되는 경우, **피인수기업의 계열사 편입을 3년 유예** ('13하.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)

* **'벤처기업'** 또는 **'매출액 대비 R&D투자 비중 5% 이상 중소기업'**

** 다만, 벤처기업을 통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 출자, 채무보증, 부당내부거래 등 발생時 즉시 계열편입 방안 병행

- 지주회사가 **증손회사 형태로 편입하는 경우 지분율 요건**을 완화 (100% 보유 → 50% 이상)하기 위한 법개정 추진

- **중소기업간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**하게 되는 경우에도 **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** ('13하.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)

2 M&A 절차 간소화

○ **(현황)** 주식회사 M&A시 '주주총회 승인'이 원칙 (상법 제522조)이나, **소규모·간이 합병**의 경우 **이사회 의결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**

- **소규모 합병** (존속법인 신주발행 **10% 이하**) 또는 **간이합병** (소멸법인 의결권 **90% 이상** 인수)의 **적용 범위가 협소**

○ **(개선)** 소규모·간이합병의 **적용범위 확대** ('13하, 벤처특별법 개정)

- **(매수기업) 소규모합병** 요건을 신주 10% → **20% 이하로 완화**

- **(매도기업) 간이합병** 요건을 의결권 90% → **80% 이상으로 완화**

(3) M&A · 성장투자형 정책자금 공급 확대

□ **모태펀드 매칭방식을 변경, M&A 투자의 실효성 제고** (1,000억원)

○ 실제 M&A 성사 단계에 투자가 되도록 **"先 펀드결성, 後 투자** (blind)**"**
→ **"先 투자대상 확정, 後 펀드결성** (project)**" 방식으로 전환**

○ M&A 대상기업 발굴 시점부터 **매수주체와 투자전략 공동 수립**

□ **정책금융기관**을 중심으로 **2조원**(정책: 0.6조, 민간: 1.4조) **규모**의 **'성장사다리펀드'를 조성**하여 **맞춤형 금융을 지원**('13.3/4분기)

○ 신·기보의 평가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**주식, 메자닌, 유동화 증권, 융자** 등 다양한 형태를 활용

- 지식재산* 금융, M&A, IPO, 재기지원** 등 **성장·회수 단계**의 **중소·중견기업** 등에 **필요한 다양한 자금**을 지원

* 지식재산권 유동화 자금공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**지식재산권 보호펀드**를 성장사다리 펀드내에 1,000억원 조성('13년중) ☞ p.22 참조

**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**구주를 인수**하고 **새로운 자금을 지원**하되, 기존 경영진의 **경영권은 유지**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

□ **우체국 금융자금**을 활용한 벤처기업 **투자 확대** ('13. 500억원, 미래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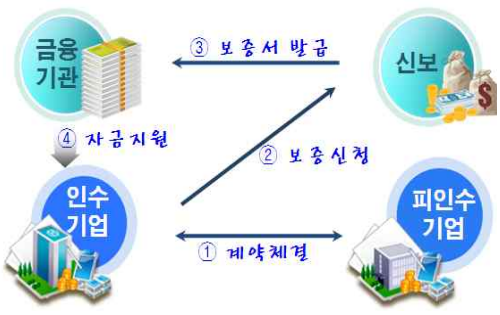
□ **기술·산업 융복합 추진**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이전, R&D, 사업화 **全단계** 걸친 **융복합 맞춤형 보증** 신설 (기보, '13. 3,000억원)

* 기존의 일회성 기술평가 보증에서 벗어나 융복합 단계별 기술가치 증대에 상응하여 단계별 소요자금에 우대 보증을 실시

□ **중소기업간 M&A**를 위한 인수기업의 금융기관 **차입**자금에 대한 **"M&A 보증"을 신규 도입** (신보, '13. 1,000억원)

○ 기존 자산평가 방식이 아닌, **미래 수익창출능력**을 **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**을 새롭게 활용

< M&A 보증 지원체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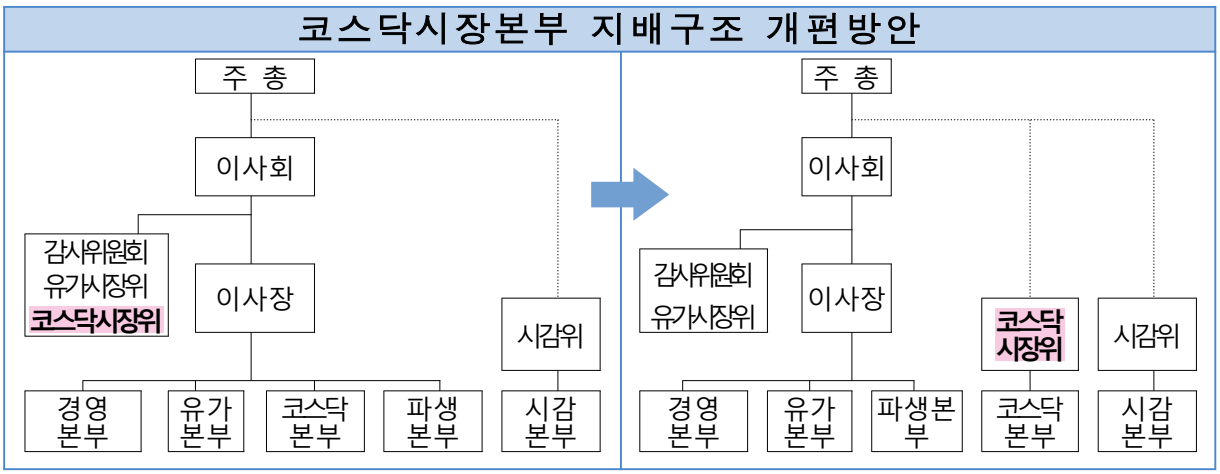
(4) 벤처·기술혁신형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 육성

1 코스닥시장의 "2부 리그" 우려 불식

투자자 보호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, 코스닥시장의 **독립성·전문성을 강화**하여 **혁신기업 자금조달 창구**로서의 **본연의 역할을 회복**

○ **코스닥 시장본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** (거래소 정관개정)

- **코스닥시장위원회**를 **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**하여, **시장감시위원회**(법정 독립기구)**에 준하는 수준**으로 조직·기능을 개편



○ **코스닥 상장위원회 구성 개선**

- **상장심사의 일관성·전문성 제고** 등을 위해, **상장위원회 위원 순환제를 폐지**하고, **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** (거래소규정 개정)

  * 현재는 심의위원단(30명 이내) 중에서 상장위원회 개최시마다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7인을 선임

○ **투자자 보호**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**상장요건** 및 **질적심사 완화**

- **(상장요건) 설립경과연수** (3년) 및 **최대주주 보호예수의무기간** (1년) 축소

- **(질적심사) 경영투명성 중심의 질적심사***를 통해 상장적격성 심사과정에서 **거래소의 자의성 개입 최소화**

  * 현재 상장심사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이외, 질적심사요건으로 기업계속성(시장성, 수익성 등), 경영투명성(범죄전력, 내부통제 등) 등을 별도 심사(총 55개 세부항목)

○ **코스닥 상장유치·지원 기능 강화**

- **상장유치 전담부서**를 확대(현재 4인)하고, **한국IR협의회**(거래소 출자) 확대 개편을 통해 **코스닥 기업 무상 IR 서비스** 제공

- **코스닥시장본부 인력**에 대한 **인센티브** 강화 (인사·연수 우대 등)

➡ **「코스닥본부 지배구조, 인적쇄신 및 상장·관리제도 개편」 세부 방안을 마련·발표('13.6월)**

2 코넥스 시장* 신설에 따른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

*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·회수를 위한 맞춤형 주식시장

○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게 **상장·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**

- **상장요건을 최소화**(감사의견 적정, 지정자문인 지정, 재무요건)하고, **공시사항도 대폭 축소**(코스닥 64항목 → 코넥스 29항목)

○ 코넥스 기업에 대한 **투자제한 완화**

- **코넥스 상장기업**과 비상장기업간 M&A의 경우,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**일부 규제*의 적용을 배제**

*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적용,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, 우회상장 규제, IFRS 적용 등

- **코넥스 상장기업**에 대해서는 **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(출자금의 20% 이내) 적용을 제외**('13.하, 창업지원법 개정)

○ 코넥스 시장 투자에 대한 **세제지원 확대**

- **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** 적용(증권거래세, 소득세 법령 개정)

*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(0.3%)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대주주(4%, 10억원)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

- 벤처캐피탈이 **코넥스 상장 2년이내 기업**의 **신주**에 투자한 경우, **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동일**한 세제혜택 적용(조특법 개정)

*** 양도차익 비과세, 배당소득 비과세, 증권거래세 비과세**

1-3 (재투자 단계) 회수자원의 생태계 재유입 여건 확충

(1) 투자금 회수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재투자 유인 강화

실제로 수익을 **실현한 경우에 과세**하고, 실현한 수익에 대해서도 창업기업 등에 **재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 도입**

□ **(현황) 비상장법인의 주식교환**시, 주식의 포괄적 교환·이전에 따라 합병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(조특법 §38 등) 외에는 **원칙적 과세**

*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(10%) 및 지방소득세(1%) 부과

□ **(개선) 전략적 제휴** 목적의 **비상장** 주식 교환시, **매도기업*** **주주**에 대해 **교환주식 처분시**까지 **양도소득세 과세 이연** ('13.하, 조특법 개정)

* **'벤처기업'** 또는 **'매출액 대비 R&D투자 비중 5% 이상 중소기업'**

○ **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**(창업주, 소유주 등) **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**을 일정기간 내 **재투자**한 경우, **처분시**까지 **양도소득세 과세 이연**

* **매각대상 : '벤처기업'** 또는 **'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'**

* **재투자 인정사유** : ① 창업투자회사 설립 ② 창투조합,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③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

(2) 국·내외 성공벤처인의 후배세대 양성기반 확충

□ **(벤처 1세대 투자)** 성공 벤처기업 등과 협력하여, **후배 청년창업가에게 집중 투자하는 펀드 중점 조성** ('13. 1,000억원)

* 모태펀드에서 펀드규모의 60%까지 우선적으로 출자 지원

[사례] 카카오 청년창업펀드

☞ '06년 창업, 카카오톡을 개발('10)하여 가입자수 1억명, 기업가치 1조원(추정)

☞ 후배 청년창업자 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(300억원, '13.4)

□ **(해외투자 유치) 해외동포 등 외국 VC도 국내 투자주체와 동등한 조건에서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**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('13.하)

○ **미국 등에서 활동 중인 우량 (top-tier) 투자회사 또는 한국계 벤처캐피탈**도 국내 VC와 **동등한 조건**하에 **모태펀드에서 출자**

- **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해외진출 및 현지창업을 후속 지원**하는 **펀드 조성** (단독형, 국내 VC 협력형 모두 허용)

* 실리콘밸리의 경우 Storm Ventures, Blue Run Ventures, DFJ Athena, Formation 8, ALTOS 등 한인 VC가 활발하게 활동 중

○ **해외 동포**가 국내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, **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**하게 **엔젤매칭펀드*** **지원 대상**에 포함

* 엔젤투자자가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:1로 매칭투자 (현재 870억원 조성)

□ **(멘토링) 성공 벤처인, 해외동포 등 우수한 멘토링 자원** 확보·활용

○ 벤처협회·INKE (한민족벤처네트워크)·韓商 등을 통해, **국내·외 성공 벤처인**으로 **"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"**를 구성·운영 ('13.하)

* 주요 역할 : 국내 창업가 멘토링 (기업가정신 강사 초빙 등), 엔젤투자 참여

○ **퇴직 과학기술인**을 활용한 창업·벤처기업 **기술 멘토링 실시** ('13.하)

○ **해외동포의 국내 창업기업 멘토·투자자 유치 활동 강화**

- **현지 창업·투자 유치의 교두보**로서 **코리아 벤처창업센터** (실리콘밸리, '13하) 및 **IT 지원센터** (3개국) **설립·운영**

* K그룹 등 해외동포를 국내 창업기업 멘토·투자자로 유치하고 현지정착 지원

[사례] 베이 에리어 K-그룹

☞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는 한인 하이테크 종사자 모임

☞ ('08.2) 정식 출범 (회원 140명) → ('12.11) **회원수 2천명** 돌파 (80%이상이 석박사)

☞ 웹서비스, 창업 등 분과별로 매달 1차례 이상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

2. 벤처·창업 인프라 확충

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**아이디어 사업화, 우수인력 유입 및 정보제공** 등 **창업·재도전 기반을 강화**

2-1 창업 플랫폼 구축 확대

□ **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계**하는 **관계부처 합동 아이디어 사업화** 전략 추진 ('13.7, 미래부·산업부·중기청·특허청 협업)

○ **"창업의 꿈"**을 실현시켜주는 **「무한상상 창업 프로젝트」 추진**

- 美 **Quirky社 모델**을 도입, 아이디어 **검증, 디자인·시장**조사 → **생산·마케팅**까지 일괄 대행 (이익은 아이디어 제안자와 공유)

- 일정 매출발생 등 **검증된 과제**는 **실제 창업**으로 유도하고, **창업자금, R&D, 특허 및 사업화 등**까지 연계 지원

* ('13) 시범운영 : 30~40개 → ('14~) 연중 상시운영 : 100개

[사례] 퀄키 (Quirky, 美)의 크라우드 소싱 (Crowd Sourcing)
① 일반 대중이 퀄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디어 제안 (등록비 $10) →
② 다른 회원 (美 20만명)이 우수 아이디어에 투표 (대중의 검증) →
③ 선정된 아이디어 상품화·판매 → ④판매수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공유

○ 국립과학관, 도서관 등에 **'무한상상실' 신규 설치** ('13. 5개 시범운영)

* 수집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박람회, 온라인 거래, VC·출연(연) 매칭 등을 통해 특허·기술창업·사업화로 연계

○ 창업자와 투자자 등이 **상시교류·협업**하는 **개방형 창업공간 조성*** 및 아이디어 제작·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**디지털콘텐츠 창작 랩 설치**

* 누리꿈스퀘어(서울 상암동),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(일산, 9월 개관)에 설치

□ **「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」** 본격 시행 ('13.6)

○ **이스라엘式 모델을 벤치마킹**,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

○ **우수 BI**와 **VC**가 **공동**으로 **보육공간**과 **투자 (15%)**를 제공하고 정부는 **3년간, 최대 5억원**의 R&D 자금 **매칭 지원 (85%)**

○ **이·공계 우수인력**의 창업 유인을 위해 **첨단기술 (High-Tech) 분야**에 한정하고, 유망 **"창업 프로젝트"**를 선발·지원

* 운용계획 : ('13) 40개 → ('14) 75개 → ('15) 100개 기술창업 프로젝트

□ **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창업 활성화**

○ 중소·중견기업 종사자 **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확대**하여 지식재산 창출·사업화 촉진

* 범부처 직무발명보상 활성화 TF ('13.5), 지식재산 성과공유 가이드 발간·개정 등

○ **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** 및 **지식재산 금융 활성화**

- IP 가치평가·금융시장의 장애요인과 지재권 기반 창업·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여 건전한 IP 금융생태계 조성

□ **정부 3.0 시대 "개방형 공공정보 활용"** 등 **SW 창업 붐** 조성

○ 국토부에서 공개한 **'공간·지리정보' 활용 사업화 아이디어**를 테마로 하는 **"앱 창업 경진대회"** 개최 ('13.하 → 타 분야로 확대)

- 수상자는 "스마트 벤처창업학교" (7개월 과정) 입교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의료 (복지부), 치안·소방 (안행부) 등으로 지속 확대

○ 공공정보 기반의 아이디어 사업화 컨설팅 및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**'빅데이터 아카데미' 신설** ('13.6)

○ 모바일·SW 분야 아이디어 발굴·사업화 및 **"글로벌 창업지원센터" 설립** ('13.8)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

* 코리아 앱 글로벌 시장개척단('13. 44개팀),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('13. 35개팀)

2-2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의 벤처·창업 유입 촉진

□ **(스톡옵션)** 우수 인력의 벤처·창업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**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확대**하고, **소득세 분할납부 허용** ('13.하)

○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**부여대상***을 **지분 30% 이상 피인수기업의 임직원**까지 확대 (벤처특별법 개정)

* 현행 : ① 벤처기업 임직원, ② 전문가(변호사 등), ③ 대학 또는 연구기관

* M&A에 따른 **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 유도** 및 **고용불안** 등 우려 **완화**

○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**소득세 부과** : **(현행)** 스톡옵션 행사시 **일괄 납부** → **(개선) 3년간 분할납부 허용**

[사례] 미국 스톡옵션 제도

☞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소득세는 행사시점이 아닌 **매각시점에서 과세**

□ **(파견·협력)** 대학·출연硏 **연구인력**의 **창업기업 참여 확산** ('13)

○ 교수-학생 공동창업 및 첨단 기술의 이전·활용을 촉진하기 위해, **교수·연구원** 등의 **휴·겸직**을 통한 **창업기업 참여 기회 확대** ('13.6)

구 분	현 행		개 선
• 휴직 대상	대학 교원 및 61개 연구기관	➡	정부출연연 등 41개 추가
• 휴직 사유	직접 창업 및 벤처기업 임원		창업기업 대표 등 추가

○ 과학기술분야 출연(硏)에 대해 **"창업친화도" 지표를 도입**하고, 목표달성도를 **기관평가에 반영** (미래부)

* 기관별 특성에 따라 연구원 창업 실적, 벤처창업기업과의 협력 실적 등 반영

* 적용 대상 : 산업기술연구회 및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25개 기관

□ **(기술이전) 정부출연(硏), 대학 기술의 사업화 촉진** (미래부)

○ 출연(硏) 연구인력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, 보유기술 **사업화**를 촉진하기 위해 **공동연구법인·연구소기업 설립 확대**

구 분	'12년		'17년(목표)
• 공동연구법인*	2개	➡	20개
• 출연(연) 연구소기업	24개		70개

* 기술공급자인 대학·출연(연)과 수요자인 기업이 기술과 자본을 공동 출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연구개발 전문회사

○ 대학 산학협력단 기능 강화* 등을 통해 **기술지주회사 자회사** 방식의 **창업을 대폭 확대** ('12. 117개 → '17. 400개)

* 산학협력단 전문인력(평균) : ('13) 1.5명 → ('17) 5명으로 확대

○ 과학기술 서비스(연구·관리, 기술분석·검색, 실험·연구안전관리 등) 기반, **과학기술인의 협동조합형 창업 촉진** ('13. 10개)

□ **(해외인력)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**의 국내 창업 및 투자 촉진을 위해 **"(가칭) 창업비자" 도입** ('13.하, 법무부)

○ '08년 **벤처기업 설립을 준비**하는 **외국인**에게 비자(2년) 발급을 허용(D-8-나 신설)하였으나, 제한적 요건으로 **활용 실적이 저조**

* D-8-나 비자 등록현황(명) : ('09) 33 → ('10) 3 → ('11) 0 → ('12) 4 → ('13.2) 5

○ 현재 벤처기업 설립 목적에 한해 운용 중인 **기업투자(D-8-나) 비자 발급 대상**을 **'기술기반 법인창업' 외국인**까지 확대

* **조건** :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

[사례] 美, Start-up 3.0 Act

☞ 공화당 **제리 모란** 상원의원 발의, **'13.6월 중** 상원표결 및 **시행** 예상

☞ **시민권·영주권 없이도** 외국인 창업을 허용하는 **2가지 유형**의 비자제도 도입

① **미국 대학**에서 이공계 **석·박사학위** 취득, 해당분야 **5년 이상** 활동 외국학생
② **10만 달러**(1억1000만원)의 **투자금을 유치**하는 외국인 창업자

2-3 기술 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

기술 보호수단을 확충하고 **기술도용·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**하여, **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M&A를 하도록 수요기반을 확대**

(1)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확대

□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 강화

○ **(현황)** 설계도면 등 **기술적 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**함으로써, **자신의 개발기술로 인정**받는 **"기술자료 임치제"** 운영

* 기술자료를 임치센터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)에 등록·보관('08~'12, 3777건 등록)

[사례] 칠곡소재 S社,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하여 기술도용 방지
☞ LCD 기술을 개발했으나 **경쟁사에서 해당 기술을 입수**하여 동일제품 개발 시도
☞ **'임치제도'를 활용 대응하자, 경쟁회사가 해당기술의 도용을 포기**

○ **(개선)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충**('13. 7,000개 → '17. 19,000개)하고, 노하우를 **설명한 영상물·녹음테이프** 등도 임치 대상에 **포함**

* 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개정('13.상),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규정 개정('13하)

□ 우수기술 보호를 위한 해외 특허출원 지원

○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, 국내특허 취득 후 **미국 등 해외 특허출원 지원을 강화** (소요비용의 80%, '13. 36억원 → '17. 80억원)

□ 시장 기능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

○ **(현황) "Sales & License Back"** 방식으로 중소기업 보유 특허 등을 유동화하는 **"지식재산권 펀드"** 운영 (산업은행, 1,000억원)

- **특허 소유가 펀드에 이전**되어, **펀드 차원**에서 **소송**을 통해 **기술유용에 적극 대처** 가능하여 **"기술보호" 효과를 보유**

* 기업보유 **특허를 펀드에 매각**하고, **계약기간(통상 3년)** 동안 전용 실시권을 확보한 후 사용료를 납부 → 기업은 특허를 다시 사오는 콜옵션(call option) 행사

○ **(개선) 지식재산권 펀드 규모를 1천억원 증액 조성**
(1,000억원 → 2,000억원, 성장사다리펀드內 1,000억원 활용, '13.하)

(2) 기술 유용·도용 행위에 대한 제재 · 처벌 강화 ('13.하)

기술탈취 등 불공정 경쟁 유발행위에 대한 **감시·고발을 강화하고,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**에는 **엄중 조치**

□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강화

○ 현재 **검찰 고발**은 위법성이 큰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나, **기술유용도 원칙적으로 고발**토록 기준을 강화 (하도급거래지침 개정)

* 기술유용의 유형 및 행태 등을 세분화하여 지침에 반영

* 현행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행위 : 보복조치, 우회적 방법으로 법 위반 등

○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결정 시, **하도급 위반행위 중 최고 등급(60점 → 100점) 적용** (하도급법 시행령 개정)

[참고] 과징금 계산 방법

☞ **과징금** = (하도급대금) × 2 × 과징금 부과율

☞ **과징금 부과율** = (위반행위 유형) × 0.4 + (하도급 대금 대비 위반금액 비율) × 0.2 + (위반행위 수) × 0.2 + (최근 3년간 위반전력) × 0.2

□ 기술유용·도용 행위에 대한 감시·모니터링 강화

○ 기술탈취가 **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**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**기술탈취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**

- 특히, **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**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강화된 기준에 따라 **엄중 제재**

○ 기술탈취 **혐의 신고 접수시** 공정위가 **철저히 조사**하고, 조사결과를 피해자의 **민사소송 등에 활용**될 수 있도록 지원

○ 온라인 불법유통, 위조상품·불법복제 등 **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·수사 활동을 강화**하고, **해외 보호체계**를 구축 (미래부)

* 불법복제 피해액('10) : 2조 1,72억원(합법시장의 19.2%),
위조상품 피해액('10) : 1조 4,028억원

2-4 M&A·기술평가 관련 정보유통 확대

1 중개기관 전용의 「중소벤처 M&A 거래정보망」 기능 강화

비밀유지가 필수적인 중소벤처 M&A 시장 특성상 매도 희망기업이 **신뢰할 수 있는 중개기관**(딜러)의 존재가 **시장의 成敗를 좌우**

○ **M&A 거래정보망**('12.7 개설)의 **'중개기관'**을 **회계법인, 창투사, 해외컨설팅사 등으로 확대**하고, 중개기관 **'인증제'를 도입**

* **현재 소형 자문사(부티크) 위주**의 운영으로 활성화에 한계

* M&A거래정보망 **등록 거래실적** 등을 기준으로 **'중개기관'을 인증**하고, 비밀유출 등 **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중개기관은 퇴출**

○ **법원·금융기관**과의 협력을 통해 **검증된 매물 정보**를 **적기에 공급**

○ **M&A** 거래 촉진을 위한 **전문 컨설팅 및 자금 연계지원**

- **(자문비용)** M&A 거래정보망을 통한 거래에 대해, **인수·합병 상담 및 추진**에 소요되는 **비용지원 확대** (1천만원 → **2천만원** 한도)

- **(자금공급)** 거래 성사로 이어질 경우, **M&A 매칭펀드*** **우선 지원**

* ('12) 300억원 → ('13) 500억원, 매수기업의 인수자금 50%를 매칭 지원

< 중소·벤처기업 전문 M&A 거래정보망 개요 >



2 기보의 「융복합 R&D 센터」('13.1)를 통한 기술평가정보 강화

○ **기술평가 및 사업화 위험** 등에 관한 **종합적인 DB**를 구축·제공

2-5 재도전 환경 개선

재도전에 따르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고, **신용불량의 사전적 예방** 및 **신속한 신용회복** 여건을 조성

□ **(자금지원)** 재기 기업인에 대하여 **정책자금 및 투자 확대**

○ 재도전기업 전용 **'재기자금' 지원 확대** ('13, 400억원 → '17, 1,000억원)

○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**1,000억원 규모의 재기펀드**를 운영

○ **재창업기업**에 대해 **엔젤매칭펀드 우대 운용** (정부: 엔젤=2:1 매칭)

□ **(사전예방) 연대보증 폐지 확대 (제1금융권 → 제2금융권)**

○ **(현황)** '12.5월부터 **은행 및 신기보 연대보증**을 **원칙적 폐지**

* 개인사업자는 원칙적 폐지, 법인사업자는 실 경영자 1인만 연대보증

○ **(개선)** '13.7월부터 **제2금융권*에도 연대보증 폐지**

* 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(카드・캐피탈・할부・리스사), 보험사

□ **(신용회복) 재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**

○ 재기기업인의 **금융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'공공정보 (은행연합회)' 등록기간을 선별적 단축** (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, 금융위)

- **(현황)** 회생기업 관련인* **정보**를 **회생절차 개시 후 5년간** 관리

* 과점주주로서 최다 출자자, 의결권 있는 주식 30%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 등

- **(개선)** 관련인 요청시 **채권 금융기관은 ①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, ② 관련인 우발채무* 발생가능성**을 감안 **공공정보 등록 해제**

* 상법 399조(고의과실, 임무해태, 정관위반 등) 위반, 임금체불시 벌금형, 부정수표 발행시 벌금형, 2차 납세의무, 연대보증 등

○ 법원과 협력하여 **기업회생컨설팅**을 실시하고, **회생절차 소요기간** (9개월→6개월) **및 비용** (80%↓)**을 대폭 감축** ('13.4, 서울지법・중기청 시범)

Ⅳ. 기대효과

* 자본시장연구원 분석

□ (투자) 향후 5년간 벤처·창업 생태계로 4.3조원 추가 투자

* (당초 전망) 6조 3천억원 → (확대) 10조 6천억원 (68.3% 증)

<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효과 (단위 : 조원)>



○ **(초기/창업 단계)** 엔젤·벤처캐피탈을 통해 **7,400억원 추가 투자**

- **엔젤** : '12년 296억원 대비 **연평균 1,000억원 (총 0.5조원) 증가**
- **벤처캐피탈** : 당초 전망 (2.27조원) 대비 **2,400억원 증가**
  * {0.2조원 (미래창조펀드) + 0.1조원 (후배청년창업가 투자펀드)} × 80% (투자비율)

○ **(중간/성장 단계)** 벤처캐피탈·사모펀드 등 **1조 8,400억원 추가 투자**

* {0.3조원 (미래창조펀드) + 2조원 (성장사다리펀드)} × 80% (투자비율)

○ **(회수 단계)** M&A, 코넥스 등을 통해 **4.4조원 회수**

- **M&A** : **340건**의 비상장 M&A 추가 성사 등을 통해 **2.4조원 회수**
  * 당초 {3조원 (M&A 시장) × 17% (피인수 M&A 비율) × 0.5 (창업자 지분) × 5년}
    + 추가 {340건 (M&A 증가분) × 68억원 (건당 평균 거래금액) × 0.5 (창업자 지분)}
- **코넥스** : **200개** 기업의 상장을 통해 **4,000억원 회수**
  * 코넥스 상장 (건, 자본연) : ('13) 20 → ('14) 30 → ('15) 40 → ('16) 50 → ('17) 60
- **벤처1세대** (11,482개, 자산 153조원) : 코스닥 등을 통해 **1.6조원** 회수
  * 2,915 억원 (지난 10년간 연평균 지분처분 산출) × 1.1배 (증가율 10% 추정) × 5년

○ **(재투자)** 회수된 자금 (4.4조원) 중 **1.7조원 환류**

* M&A : {1.3조(당초)× 35%(환류자 비율) × 80%(환류율)} + {1.1조(추가)× 57%(투자의향)}
* 코넥스 : 0.4조원(회수금액) × 57%(재투자 의향)
* **벤처1세대(코스닥)** : 1.6조원 × 35%(환류자 비율) × 80%(환류율)

□ **(부문별 효과)** 향후 5년간 **벤처기업, 엔젤, 벤처캐피탈**에 대한 영향

○ **(벤처기업) 매출액과 고용**은 **각각 1.7%p, 0.8%p 증가**

구 분	성공기업 (18.3%)	보통기업 (65.2%)	저성장 기업 (16.5%)	평 균
매출액	0.1%p	1.5%p	4.1%p	1.7%p
고 용	0.2%p	0.8%p	1.2%p	0.8%p

* (고성장) 매출액 증가율 34.8% 이상, (보통) 9.8%~34.8%, (저성장) 9.8% 미만

○ **(엔젤)** 등록 투자자 수는 **('12) 2,608명 → ('17) 12,000명**으로 증가

-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**평균 투자금액 30% 확대** (47→62백만원)

* 소득공제 확대(30→50%)시 투자 의향 : 소득기준 44.6%, 자산기준 21.7% 증

○ **(벤처캐피탈)** 연간 투자규모가 **평균 7.2% 증가 → 2조원에 근접**

* ('12) 1조 2,300억원 → ('13) 1조 7,215억원 → ('14) 1조 7,593억원 → ('15) 1조 7,971억원 → ('16) 1조 8,348억원 → ('17) 1조 8,726억원

□ **(세수)** 벤처기업 성장 등으로 **5년간 1.6조원 세수 순증 전망**

○ **(증가 요인)** 기존 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형 M&A 증가로 **총 1.8조원 세수 확대**

- 벤처기업 성장에 따른 **법인세·소득세 1조 7,600억원 증가**

* 법인세 증가(1조 3,657억원) : 매출 증가분(1.7%p) × 매출 대비 법인세율(1.6%)
* 소득세 증가(3,992억원) : 고용증가분(0.8%p) × 인건비(27백만원) × 소득세율(10%)

- 기술혁신형 M&A 확대로 **양도세 약 400억원** 증가

* M&A 증가건(49건) × 평균 거래이익(35억원) × 지분율(50%) × 양도세(10%) × 5년

○ **(감소 요인)**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으로 약 **2,200억원 세수 감소**

- 기술혁신형 **M&A 세제 감면** 혜택으로 **법인세 약 1,500억원 감소**

* 연간 거래건수 (487건) × 법인세 공제율(10%) × 의제기술가치 (26억원) × 법인세율 (24.2%) × 5년

- **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**으로 **소득세 약 670억원 감소**

* {(0.62억원 × 50%) - (0.47억원 × 30%)} × 38%(소득세율) × 10,570명(5년간 투자자)

Ⅴ. 향후 계획

□ 추진계획

○ **성공사례 발굴·홍보** 등을 통해, 벤처·창업 및 M&A 활성화 **분위기 확산**

*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고, 주요 언론 및 SNS 등을 활용하여 대책의 의의·내용 등을 중점 홍보

○ 세부 정책과제는 **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사후관리**

*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, 개선사항 발굴

□ 과제별 실천계획

정책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1.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		
1-1-①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신설	'13.하	금융위·중기청
1-1-② 엔젤소득공제 확대	'13.하	기재부, 중기청
1-1-③ 전문엔젤 육성	'13.하	중기청
1-1-④ 미래창조펀드 조성	'13.하	기재, 미래, 금융, 중기
1-1-⑤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신설	'13.3	금융위
1-2-① 기술혁신형 M&A 세제특례 도입	'13.하	기재부
1-2-② 대기업 인수기업의 계열사편입 유예 등	'13.하	공정위
1-2-③ 중소기업 M&A 시 중소기업 졸업 유예	'13.하	중기청
1-2-④ M&A 절차 간소화	'13.하	법무부, 중기청
1-2-⑤ 모태펀드의 M&A투자 매칭방식 변경	'13.하	중기청
1-2-⑥ 성장사다리펀드 등 성장투자 확대	'13.하	금융위, 미래부
1-2-⑦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	'13.하	금융위
1-2-⑧ 중소기업 M&A 보증 도입	'13.하	금융위
1-2-⑨ 코스닥 시장본부 독립성 강화	'13.하	금융위
1-2-⑩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개선	'13.하	금융위

정책 과제	추진일정	소관부처
1-2-⑪ 코스닥 상장유치·지원 기능 강화	‘13.6	금융위
1-2-⑫ 코넥스 상장·공시 부담 완화	‘13.6	기재부, 금융위
1-2-⑬ 코넥스 기업 투자제한 완화	‘13.6	금융위, 중기청
1-2-⑭ 코넥스 시장 세제 지원 확대	‘13.하	기재부
1-3-① 주식교환 및 재투자시 과세이연 허용	’13.하	기재부
1-3-② 벤처1세대 투자 펀드 조성	’13	중기청
1-3-③ 해외동포 등 해외투자 유치	’13.하	중기청
1-3-④ 성공 벤처인 등 멘토링 자원 확보	’13.하	미래부, 중기청
2. 벤처·창업 인프라 확충		
2-1-① 창의성 기반 창업·사업화 추진	’13.하	미래, 산업, 중기, 특허
2-1-②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창업 프로그램	’13.6	중기청
2-1-③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	’13.하	미래부
2-1-④ 공공정보 활용 등 SW 창업 붐 조성	‘13.하	미래부, 중기청
2-2-① 스톡옵션 부여 확대 및 세제지원	’13.하	기재부, 법무부, 중기청
2-2-② 출연(연) 연구인력 창업참여 확산	‘13.하	미래부, 중기청
2-2-③ 출연(연), 대학 기술사업화 촉진	‘13.하	미래부
2-2-④ 창업비자 도입	‘13.하	법무부
2-3-① 중소기업 핵심기술 공증 및 유출방지	‘14	기재부, 중기청
2-3-② 해외 특허 출원 지원	‘13.하	특허청
2-3-③ 지식재산권 보호펀드 추가 조성	‘13.하	금융위
2-3-④ 기술유용 행위 고발 및 과징금 강화	‘13.하	공정위
2-3-⑤ 기술유용 행위 감시 강화	‘13.하	공정위, 미래부
2-4-① 중소벤처 M&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	‘13.하	중기청
2-4-② 기술평가정보 제공 강화	‘13	금융위
2-5-① 재기기업인 자금 및 투자 확대	‘13.하	기재부, 금융위, 중기청
2-5-② 연대보증 폐지 확대	‘13.7	금융위
2-5-③ 공공정보 등록 선별적 단축	‘13.하	금융위
2-5-④ 회생컨설팅 실시	‘13.4	법원, 중기청